

[별지 제1호서식]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의 □제작 □수입 신청서						처리기간
						3 일
① 회 사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 표 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					전화번호	
⑥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⑦ 계량기명	⑧ 규 격	⑨ 수 량	⑩ 제 작 (수입)일자	⑪ 용 도	⑫ 법 정 단 위	⑬ 표 시 단 위
계량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 도 지 사 귀 하						
구 비 서 류						수 수 료
없 음						없 음

210mm × 297mm

(인쇄용지(특급) 70g/m²)

[별지 제2호서식]

☐ 계량기제작업 ☐ 계량기수리업 ☐ 계량증명업			등 록 신 청 서		처리기간
					20 일
① 회 사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 표 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			전화번호		
⑥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⑦ 계 량 기 종 류					
계 량 에 관 한 법 률 제5조 의 규 정 에 의 하 여 하 고 자 신 청 합 니 다. ☐ 계량기제작업 ☐ 계량기수리업 ☐ 계량증명업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 도 지 사 귀 하					
구 비 서 류				수 수 료	
1. 검사설비명세서 1부 2. 검사실의 도면 1부 3. 계량실의 도면(계량증명업에 한합니다) 1부				계 량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

제 호

☐ 계량기제작업
☐ 계량기수리업
☐ 계량 증명업

등 록 증

회 사 명 (상 호) :

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사 업 장 소 재 지 :

계 량 기 종 류 :

최초등록연월일 :

위와 같이 계량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 계량기제작업
☐ 계량기수리업
☐ 계량 증명업

의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 · 도 지 사

인

[별지 제4호서식]

☐ 계량기제작업 ☐ 계량기수리업 등록사항변경신고서 ☐ 계량 증 명 업			처리기간
			7 일
① 회 사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 표 자		④ 주 민 등 록 번 호	
⑤ 주 소		전화번호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⑦ 변 경 된 사 항			
⑧ 변 경 사 유			
계량에 관한법률제5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 · 도 지 사 귀 하			
구 비 서 류			수 수 료
1. 등록증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없 음

[별지 제5호서식]

☐ 계량기제작업 ☐ 계량기수리업 등록증재교부신청서 ☐ 계량 증 명 업			처리기간
			7 일
① 회 사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 표 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		전화번호	
⑥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⑦ 재 교 부 사 유			
계 량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제5조제3항의 규 정 에 의 하 여 등 록 증 을 재 교 부 받 고 자 신 청 합 니 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 도 지 사 귀 하			
구 비 서 류			수 수 료
없 음			없 음

형식인증신청서						처리기간 20 일	
① 회사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소				전화번호			
⑥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⑦ 계량기종류		⑧형명과 형의기호			⑨ 규격		
⑩ 등록구분				⑪ 등록연월일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인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술표준원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제품의 사용설명서 1부 2. 제품의 분해조립도 1부 3. 각부분의 회로도 및 부품목록 1부 4. 제품의 봉인장치 및 관련도면 1부 5. 제조공정도 1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36조의 규정 에 의하여 산업자원 부장관이 고시한 금 액	

(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9호서식]

형식인증시험성적서				
① 회사명			② 전화번호	
③ 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소				
⑥ 계량기의종류			⑦ 규격 및 형식	
⑧ 신청구분			⑨ 신청연월일	
⑩ 시험항목	⑪ 기준값	⑫ 시험성적	⑬ 합부	⑭ 비고
위 시험결과는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인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시험한 결과입니다.				

형식인증 번호 제 호

형 식 인 증 서

1. 회 사 명 :
2. 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
3. 주 소 :
4. 계 량 기 의 종류 :
5. 규 격 및 형 식 :

위 계량기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그 형식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기 술 표 준 원 장 인

Agency for Technology & Standards, MOCIE



Member State of OIML

Korea

OIML Certificate N°

R76/1992-KR-00.01

OIML CERTIFICATE OF CONFORMITY

Issuing authority

Name :

Address:

Person responsible:

Applicant

Name :

Address:

Manufacturer of the certified pattern

Name :

Address:

Identification of the certified pattern

Type : LP-15

Class :

Max :

e :

n :

This certificate attests the conformity of the above-mentioned pattern (represented by the samples identified in the associated test report)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following Recommendation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Legal Metrology (OIML):

R76-1, edition 1992, for accuracy class

Pape 1. This certificate includes 2 pages

210mm × 297mm

(인쇄용지(특급) 120g/m²)

OIML Certificate N°

R76/1992-KR-00.01

This certificate relates only to the metrological and technical characteristics of the pattern of the instrument concerned, as covered by the relevant OIML International Recommendation.

This certificate does not bestow any form of legal international approval.

The conformity was established by tests described in the associated test report R76/1992-KR-00.01 that includes 58 pages.

The issuing authority

The OIML member

March 2000

March 2000

Important note: Apart from the mention of the certificate's reference number and the name of the OIML Member State in which the certificate was issued, partial quotation of the certificate or of the associated test report is not permitted, though they may be reproduced in full.

형식인증서 변경사유(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변경 20일 재교부 7일		
신청인	① 회 사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 표 자				④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⑤ 본 사		(전화:)					
	⑥ 사 업 장		(전화 :)					
⑦ 계량기의 종류					⑧ 규격 및 형 식			
					⑨ 형식인증 번 호			
⑪ 변경·분실 등 사유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인증서의 변경사유(재교부)를 제출(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 술 표 준 원 장 귀 하								
구 비 서 류								수 수 료
형식인증서(헐어 못 쓰게 되어 재교부받는 경우에 한합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신문용지 54g/m²)

계 량 기 검 정 신 청 서						처리기간
						10 일
신청인	① 회 사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 표 자		④ 주 민 등 록 번 호			
소재지	⑤ 본 사	(전화 :)				
	⑥ 사 업 장	(전화 :)				
⑦ 검 정 장 소						
⑧ 계량기명	⑨ 규 격	⑩검 정 구 분	⑪ 수 량	⑫ 수 수 료		⑬ 비 고
				단 가	금 액	
합 계						
계량에관한법률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계량기 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 도 지 사 귀 하 지정검정기관의 장 귀 하						
구 비 서 류						수 수 료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 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없 음						

[별지 제14호서식]

지 정 검 정 기 관 지 정 신 청 서				처리기간
				40 일
신 청 인	① 회 사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 표 자		④ 주 민 등 록 번 호	
소 재 지	⑤ 본 사	(전화 :)		
	⑥ 사 업 장	(전화 :)		
⑦ 지정신청분야				
계 량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 여 위와 같이 검정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 술 표 준 원 장 귀 하				
구 비 서 류				수 수 료
1. 검정요원 및 검정설비 현황을 기재한 서류 1부 2. 검정업무규정 1부				없 음

[별지 제15호서식]

계량기 자체검정사업자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40 일
신청인	① 회사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⑤ 본사	(전화 :)		
	⑥ 사업장	(전화 :)		
⑦ 지정신청 품목 및 규격				
⑧ 제작업 등록분야				
계량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기술표준원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검정요원 및 검정설비 현황을 기재한 서류 1부 2. 검정업무규정 1부 3. 국제법정계량기구(OIML) 또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서 발행한 국제형식인증서 또는 이에 준하는 형식인증서 1부 4. 최근 2년간의 검정결과를 기재한 서류(지정검정기관이 발행한 것에 한함) 1부				없음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

제 호

검정기관지정증

회 사 명 :

본 사 소 재 지 :

사업장 소재지 :

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

지 정 분 야 :

계 량 에 관 한 법 률 제13조 제1항 의 규 정 에 의 하 여 위 와 같 이
검정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기 술 표 준 원 장 인

제 호

자 체 검 정 사 업 자 지 정 증

회 사 명 :

본 사 소 재 지 :

사업장 소재지 :

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

지 정 품 목 및 규 격 :

계 량 에 관 한 법 률 제13조 제3항 의 규 정 에 의 하 여 위 와 같 이
자 체 검 정 사 업 자 로 지 정 합 니 다.

년 월 일

기 술 표 준 원 장 인

[별지 제18호서식]

자 체 수 리 기 관 인 정 신 청 서			처리기간
			20 일
① 기 관 명		②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③ 대 표 자		④ 주 민 등 록 번 호	
⑤ 주 소	(전 화 :)		
⑥ 사 업 장 소 재 지	(전 화 :)		
⑦ 관 리 인 의 성 명			
계 량 에 관 한 법 률 제 15 조 제 1 항 및 동 법 시 행 령 제 13 조 의 규 정 에 의 한 계 량 기 자 체 수 리 기 관 으 로 인 정 을 신 청 합 니 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 도 지 사 귀 하			
※ 구비서류 1. 기술인력의 자격증명서 사본 각 1부 2. 검사설비명세서 1부 3. 보유계량기에 대한 품질관리계획서 1부			

제 호

자 체 수 리 기 관 인 정 증

기 관 명 :

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

공장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

관리인의 성명 :

최초 인정 연월일 :

계량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수리기관으로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시 · 도 지 사 인

[별지 제20호서식]

기 준 기 검 사 신 청 서				처 리 기 간
				30 일
① 회 사 명		② 전 화 번 호		
③ 대 표 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 기 준 기 명				
⑥ 형 식 및 규 격				
⑦ 제 조 자				
⑧ 기 물 번 호				
계량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기검사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중소기업청장 · 지방중소기업청장 · 기술표준원장 · 지정검정기관의 장 귀하				
			수 수 료	
			계량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 한 금액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21호서식]

번 호 :			
기 준 기 검 사 합 격 서			
① 회 사 명		② 전 화 번 호	
③ 대 표 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 기 준 기 명			
⑥ 형 식 및 규 격			
⑦ 제 조 자			
⑧ 기 물 번 호			
⑨ 기 차			
⑩ 유효 기 간	년 월 일		
⑪ 기 차 보 정 방 법			
⑫ 용도 또는 사용방법			
⑬ 참 고 사 항			
계 량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제 28 조 제 5 항 의 규 정 에 의 하 여 위 와 같 이 기 준 기 검 사 합 격 서 를 교 부 합 니 다. 년 월 일 중소기업청장 · 지방중소기업청장 · 기술표준원장 · 지정검정기관의 장 인			

문서번호 : 년 월 일
수 신 : 발 신 : (인)
제 목 : 정기검사계량기수량조사보고서

성명 또는 상호명	주 소	업 종	계 량 기			비 고
			종 류	형식 또는 규 격	수 량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10mm × 297mm

(신문용지 54g/m²)

소 재 장 소 정 기 검 사 신 청 서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 민 등 록 번 호
	③ 주 소			
④ 상 호				
⑤ 계 량 기 의 소 재 장 소				
⑥ 정 기 검 사 를 받 을 계 량 기		종 류	형 식 또 는 규 격	수 량
⑦ 소 재 장 소 정 기 검 사 를 받 을 사 유				
⑧ 정 기 검 사 기 일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재장소 정기검사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 도 지 사 귀 하				

(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24호서식]

정 기 검 사 연 기 신 청 서				처리기간
				즉 시
① 성 명		② 주 민 등 록 번 호		
③ 주 소				
④ 계 량 기 종 류	계 량 기 명	형식 또는 규격	수 량	
⑤ 정 기 검 사 를 받을 수 없는 사유				
⑥ 회 망 검 사 일 자				
위의 계량기에 대하여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으므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검사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 도 지 사 귀 하				

제 호	사 진 2.5cm × 3.0cm
계량검사공무원증	
성 명 :	
소 속 :	
직 급 :	
년 월 일 발행 (1년간 유효)	
시 · 도 지 사 인	

90mm×60mm

(인쇄용지(특급) 120g/㎡)

1. 검사기간중 이 신분증은 항상 지닐 것
2. 관계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내보일 것

제 호			
계 량 기 · 상 품 제 출 요 구 서			
① 품 명		② 수 량	
③ 사 유			
④ 제 출 기 일		⑤ 제 출 장 소	
계 량에 관 한 법 률 제18조제2항 및 동 법 시 행 규 칙 제34조의 규 정 에 의 하 여 위의 계 량기 · 상 품을 제 출 하 시 기 바 랍 니 다. 년 월 일 시 · 도 지 사 인 귀 하			

계량기 사용 중지 처분장			
품명		기물번호	
사용중지 사유			
사용중지 기간			
위의 계량기는 계량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정계량기로서 위 기간동안 사용을 중지합니다. 년 월 일 시 · 도 지 사 인 검사자 : 계량담당공무원 (인)			
※ 유의사항 1. 상기 사용중지기간중 본 계량기를 거래용이나 증명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본 계량기 사용중지처분장 또는 사용금지 가봉인을 임의로 파손하거나 헐어 못 쓰 게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계량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